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46호 2018. 11.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33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81호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133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

삼척시 우지동 산88-1번지 외 1필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21.

삼척시장

1. 사 업 명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 **동 **호
 - 성 명 : 김 * 녀 외 1인
3. 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우지동 산88-1번지 외 1필지
 - 지 목 : 임야
 - 지 적 : 11,801㎡
 - 승인면적 : 7,401㎡
 - 개간의 용도 : 개전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9. 03. 30. 까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1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11. 2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회강2길 419 (마평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244	강원도 삼척시 회강2길 419 (마평동)	2018112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회강길분기)	
2		이	하	여	백		
3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244	강원도 삼척시 회강2길 419 (마평동)	20181123	진물신축	20090626	도로명주소(회강2길)부기)	

삼척시 공고 제2018 - 881호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삼척시장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18. 9. 4. 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서 변경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 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내용을 알기 쉽게 별표로 규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이해도 제고(안 제3조제1항, 안 별표 1)
- 나.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안 제54조제2항)
 - * (현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다.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안 제150조제3항)
- 라. 조직개편에 따른 제1관서 변경 및 신설(안 별표 2)
 -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삼척시 조직개편 '18. 10. 1일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회계과
 - 전화 : 033-570-3271 ○ FAX : 033-570-3135
 - ※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사·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지출원인행위정리 구분표를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4)”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50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별표 1은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 실·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자.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주사, 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주사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현행	개정안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같음) 2. 제1관서 가. 징수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단, 상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다. 재무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전문위원. 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소장으로 함(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서무담당주사가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	

현행	개정안
<p>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u>다. 채권관리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u> <u>바. 부채관리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u> <u>사.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u> <u>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u> <u>자. 일상경비출납원-재무(지출)업무 담당주사</u> <u>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p> <p>3. 기타관서·임시관서</p> <p><u>가. 징수관 - 관서의 장</u> <u>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u> <u>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u> <u>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급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 <u>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 <u>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p> <p>4. 읍면동</p> <p><u>가. 징수관 - 읍·면·동장</u> <u>나. 재무관 - 읍·면·동장(분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u></p>	

현행	개정안
<p><u>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u> <u>라. 지출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분청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u> <u>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u> <u>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 <u>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u></p> <p>5. 읍·면의 출장소</p> <p><u>가. 분임재무관 - 소장</u> <u>나.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 <u>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u></p> <p>② (생략)</p> <p>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u>별표1</u>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별표 2</u>----- ----- ----- -----</p>

『별지 1』

(별표1) <신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칭	시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입 관	자치행정국장	-	-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경으로 함
분 입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경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분 입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사무담당이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관 채 권 관 리 관	자치행정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관 부 채 관 리 관	기획감사실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기 금 총 관 관 리 관	기획감사실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재무(지출)업무담당	의사담당	재무(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 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 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	의사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사무업무담당	-	각 실·과 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의 현 금 출 납 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입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 입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입 재 무 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관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 관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기 금 총 관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사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사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의 현 금 출 납 원	사무업무담당(자)	사무업무담당자	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의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지 2」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2〉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의회사무과	도계보건출장소	<삭 제>	도계보건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원덕보건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원덕보건출장소
보 건 소	임 시 관 서	보 건 소	<삭 제>
상하수도사업소		<삭 제>	
<신 설>		상수도사업소	
<신 설>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제54호, 2018.9.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도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